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2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2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12. 15) 상정
-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12.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조재형)

가. 제안이유

- 부천시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폭 넓은 자문을 위하여 장기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 위원회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을 담당할 경제분과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 자문위원회 기능과 회의 등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45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
- 위원회는 시의 중·장기 발전전략,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 지역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

- 분과위원회는 경제·문화·건설교통·복지·환경 및 자치행정 등 6개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7~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정함.(안 제9조의3 신설)
- 회의는 위원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연 1회이상, 분과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주무과장으로 함.(안 제10조의2 신설)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의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도록 함. (안 제10조의3 신설)
-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비밀 누설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의4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자문위원이 많음으로 위원회 활동시 취득한 업무와 자료의 사적 활용 및 유출에 따른 예방 및 보안의식 고취 요망.	○ 위원회 구성 후, 위원별 보안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우려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2호
의결 년월일	2004.12.23 (제116회)

제출연월일 2004. 12. 8.

제 출 자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부천시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폭 넓은 자문을 위하여 장기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 위원회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을 담당할 경제분과위원회를 포함한 6개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 자문위원회 기능과 회의 등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장기발전자문위원회 위원수를 15인에서 45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안 제8조)
- 나. 위원회는 시의 중·장기 발전전략,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 지역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

- 다. 분과위원회는 경제·문화·건설교통·복지·환경 및 자치행정 등 6개 분과위원회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7~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정함.(안 제9조의3 신설)
- 라. 회의는 위원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하고, 전체회의는 연 1회이상, 분과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주무과장으로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의 출석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도록 함. (안 제10조의3 신설)
- 사.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비밀 누설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정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민주성·효율성은 물론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입각하여”를 “근거하여”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계획수립) 시장은 시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부천시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이 된다.

제6조(계획의 수정·보완)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중 “제5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성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5인이내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3(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는 경제·문화·건설교통·복지·환경 및 자치행정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④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의는 위원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하되 전체회의는 연 1회이상, 분과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이상 개최한다.

②전체회의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이 된다.

②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주무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제10조의3 (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4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10조의5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의5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 시정 업무수행의 효율적·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능률성·민주성·효율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여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정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민주성·효율성은 물론 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기본원칙) ①시의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기본원칙) ①----- ----- ----- 근거하여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 (기본이념) 부천시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수립의 기본이 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p>	<p>제5조 (계획수립) 시장은 시정책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으로 부천시장기발전계획(이하 "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는 시정운영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이 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연동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p>	<p>제6조(계획의 수정·보완) 시장은 변화하는 사회현상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p>
<p>제7조(책정기준) 제5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책의 책정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정책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성 3. (생략) 	<p>제7조(책정기준) 다음 각호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성 3. (현행과 같음)
<p>제8조(자문위원회) 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부천시장기발전계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생략)</p>	<p>제8조(자문위원회) 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장기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5인이내로 구성하며, 분야별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기발전계획 업무담당과장이 된다.</u></p>	<p><u>④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제10조(기능) 위원회는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p>	<p>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u> 2. <u>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u> 3. <u>지역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u> 4.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u>
<p><u><신 설></u></p>	<p>제9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p> <p>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9조의3(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분과위원회는 경제·문화·건설교통·복지·환경 및 자치행정 등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p> <p>④기타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p> <p>②정기회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p> <p>③(생략)</p> <p><신설></p>	<p>제10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하되 전체회의는 연 1회이상, 분과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이상 개최한다.</p> <p>②전체회의는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기발전계획업무 담당이 된다.</p> <p>②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활동분야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주무담당이 된다.</p> <p>③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0조의3(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u>필요한 경우 안전심의 등에 관련 되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p>
<p><신 설></p>	<p>제10조의4(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u> 2. <u>제10조의5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u> 3. <u>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u>
<p><신 설></p>	<p>제10조의5(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u>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u></p>